



: 2020-10-22

서울고등법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노82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나. 주식회사 D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수환(기소), 김충한, 김성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중택, 안정호, 문준섭, 엄승찬, 장재혁(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이해인(피고인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고합225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D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이하 '국가과제'라 한다)의 정부출연금을 모두 해당 국가과제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구입한 부품과 장비는 해당 국가과제에 투입되었다. 다만, 구매한 부품과 장비 중 일부에 대하여 D이 수행한 일반과제와 혼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2)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이 사건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18 기재 'AA' 과제(이하 'AA' 과제라 하고, 다른 국가과제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범죄일람표 '약칭'란 기재 명칭으로 간략히 표시한다)의 정부출연금 3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위탁연구개발비로서 위탁기관에 직접 지급되는 것일 뿐 D에 지급된 현금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이 부분 허위 신청금액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위탁연구개발비 6,000만 원 부분은 편취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연구개발비 편취 범행에서 기망의 상대방 및 피해자는 대한민국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실제 기망행위를 당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전담기관이므로,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고, 전



담기관과 국가과제별로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C: 각 징역 3년, 피고인 D: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액을 합계 4,590,507,598원에서 합계 4,581,351,104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¹⁾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D 사무실에서 기업 또는 연구소 등에서 의뢰받아 시험기 등 특수목적으로 사용 되는 장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반과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면서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국고보조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6 관련 허위 신청금액을 303,607,901원에서 293,647,901원으로 감축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액이 위와 같이 감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3.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일반과제인 'F'를 수행하는 연구원이 (주)G로부터 'H 등 부품'을 구입한 것임에도 정부출연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국가과제인 'I'을 수행하면서 위 부품을 구입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이하 'RCMS'라 한다)을 통해 국가과제의 소요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7. 23.경 국가과제 부품비 5,566,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25.경부터 2016. 6. 18.경까지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과제 부품을 구입하면서 국가과제 부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I' 등 총 11개 국가과제 부품비 명목으로 합계 4,581,351,104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D에서 수행하는 일반과제의 자재를 구입하면서 마치 국가과제의 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 지급 요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D에서 근무하였던 N(가명)는 D이 국가과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제보



하였다.

② D의 내부 문서인 '국가과제 예실대비표'(이하 '예실대비표'라 한다)에는 국가과제 연구비로 지출한 품목과 금액을 기재하는 '집행내역', '집행금액' 항목과 위 품목이 어떠한 국가과제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기재하는 '국가과제명', '예산' 항목 외에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이 있는데,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에는 '국가과제명' 항목에 기재된 과제와는 별개의 국가과제나 일반과제가 기재되어 있다. 예실대비표를 작성한 J은 "O으로부터 일반과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받으면 직속 상사인 P이 예실대비표에 입력할 국가과제를 특정해 주어 이에 따라 예실대비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O과 P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예실대비표의 '집행내역', '집행금액' 항목에 기재된 각 지출은 위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실대비표는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품목을 구입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 과제명' 항목에 기재된 국가과제의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실대비표는 그 작성 경위, 기재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신용성이 높다.

다. 당심의 판단

수사기관은 D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D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11개 국가과제 전부에 대해서 작성한 '국가과제 예실대비표'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확보하였고, 위 예실대비표에서 '국가과제명' 항목과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이 불일치하는 품목에 대한 집행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일람표 '허위 신청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11개 국가과제와 관련하여 예실대비표에서 '국가과제명' 항목과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이 불일치하는 모든 집행내역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청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가 허위 청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허위 청구하였는지를 특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면서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예실대비표 '집행내역' 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 기재 일반과제에는 사용될 수 없는 부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D이 'AB' 국가과제(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20)에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한 'Return filter'(거래처 BU, 집행일자 2015. 4. 30.) 부품의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에는 'BV(2015)'이라는 일반과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Return filter' 부품은 유압회로 내에서 이물질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서, 높은 압력의 유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회전운동을 하는 장치로 유체순환을 위한 유압회로가 필요한 'BW'



에는 필수적인 반면에, 시험편(test-piece)의 마찰력과 축 방향 힘을 측정하는 장비로 유체순환을 위한 유압회로가 필요 없는 'BV'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② D이 'T' 국가과제(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2)에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한 'BX'(거래처 BY, 집행일자 2015. 5. 20.) 부품의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에는 'BZ'이라는 일반과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BX' 부품은 작은 힘을 측정하기 위한 로드셀 부품으로 측정 범위가 10kgf에 불과한 반면에, 'BZ'는 재료의 물리적 극한치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 그 힘의 측정 범위가 위 부품의 2만 배에 달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어, 위 부품이 'BZ'의 점검에서 활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③ D이 'T' 국가과제(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3)에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한 'CA'(거래처 CB, 집행일자 2014. 11. 20.) 부품의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에는 'CC'라는 일반과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CA' 부품은 CAN 통신 방식의 신호를 USB통신 방식의 신호로 전환해 주는 기능을 하는 통신 변환 모듈로서, CAN 통신 방식은 하나의 선으로 다양한 제어 정보를 보내줄 수 있으므로 전기적 배선을 위한 공간이 좁은 로봇이나 자동차 등을 제작하는 데에 주로 활용된다. 반면에 'CC'는 CAN 통신 방식을 통한 제어 기능 없이 단순한 동작을 순차적으로 제어하는 장비에 불과하므로, 위 부품은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예실대비표 '집행내역' 항목에 기재된 가공비 지출 내역 중에는 '국가과제명' 항목 기재 해당 국가과제에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이 존재한다.

① D이 'AD' 국가과제(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23)에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한 'CE 외', 'FLEXURE TUBE 외 4종', 'AL6061판재 외 5건' 등 부품 가공비의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에는 다른 일반과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집행내역과 구



매증빙서류, AD 과제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도면, AD 과제는 D이 개발한 Y의 사용시간 장기화에 따른 성능저하 등 AD 문제를 해결하고 수명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공비 지출을 통하여 만들어진 부품은 모두 AD 과제에 사용된 소형 Y의 부속품으로 보이므로, 위 가공비는 실제로 AD 국가과제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D이 'I' 국가과제(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2)에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한 'DM-Body frame ass'y', 'Wheel moter base', 'pin link ass'y', 'joint rolling ass'y', 'encoder blkok', 'bevel gear', 'joint rolling base', 'magnet holder ass'y', 'joint coupling', 'p_m side & upper ass'y', 'p_m side #1, #2 ass'y', 'support wheel motor ass'y', 'encoder block ass'y' 등 부품 가공비의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에는 다른 일반 과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I 과제의 연구개발목표는 CF 전체의 시제품을 개발·제작하고 이를 가스 배관에 투입하여 주행시험을 하는 것인데, 위 CF은 전기 모터로 구동력을 얻는 '드라이브 모듈', 로봇의 위치를 공압력으로 고정시키는 '서포트 모듈', 물리적으로 각 모듈을 연결시켜 주며 회전하는 '조인트 모듈', 피스톤을 돌려 I 내부의 공기압력을 높여주는 '펌프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I 과제 관련 상세 집행내역, 구매증빙서류, D이 I 2차년도 과제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도면 등에 비추어 보면, 'DM-Body frame ass'y', 'Wheel moter base', 'pin link ass'y' 부품은 '드라이브 모듈'에, 'encoder blkok', 'bevel gear', 'joint rolling base', 'magnet holder ass'y', 'joint coupling' 부품은 '조인트 모듈'에, 'p_m side & upper ass'y', 'p_m side #1, #2 ass'y' 부품은 '펌프 모듈'에, 'support wheel motor ass'y', 'encoder block ass'y' 부품은 '서포트 모듈'에 각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예실대비표 '집행내역' 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 기재 일반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구입되어, 시간적 선후 관계상 해당 일반과제에는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일반과제인 'CG' 과제는 D이 (주)CH로부터 발주를 받아 CI대학교 산학협력단에 'CG'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과제로 2013. 8. 20. 완료되었다. 그런데 I 과제(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3)에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한 'Heat Exchanger Plate 외 9종'(거래처 BU, 집행일자 2014. 11. 29.), 'CJ 외 5건'(거래처 CK, 집행일자 2014. 11. 25.) 등을 비롯하여 예실대비표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에 'CG' 과제가 기재된 다수의 품목에서 그 집행일자가 위 과제의 납품일 이후인 것이 확인된다. 당심 법원의 (주)C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CH는 CG를 납품받은 이후 A/S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위 품목들이 'CG' 과제에 사용되었을 여지는 없다.

② 일반과제인 'CL' 과제는 D이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과제로 2014. 11. 7. 완료되었다. 그런데 Z 과제(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6)에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한 '시그널컨버터(CM)'(거래처 CN, 집행일자 2015. 2. 9.), 'CO'(거래처 CP, 집행일자 2015. 5. 20.) 등을 비롯하여 예실대비표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에 'CL' 과제가 기재된 다수의 품목에서 그 집행일자가 위 과제의 납품일 이후인 것이 확인된다. 당심 법원의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납품 이후에도 성능시험장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2015. 11.경 이후의 일로 위 품목들의 집행일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 품목들이 위 과제의 A/S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그밖에도 예실대비표 '집행내역' 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 '실 지출 프로젝



트' 항목 기재 일반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구입된 것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예실대비표에 기재된 지출 내역 중에는 국가과제의 사업비 지급에 이용되는 RCMS를 통해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지 않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D이 수행한 'Z' 과제(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7)의 전담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제보자 N(가명)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을 전달받고 2017. 2. 10. 및 같은 달 13. D 기술연구소에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소속 연구원 M는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예실대비표를 전달받아 확인하였으나, 예실대비표에 기재된 내용은 RCMS를 통해서 집행한 내역과 맞지 않았다. RCMS에서 집행한 목록이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되었는데, 이에 따라 실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제보자 N(가명) 및 예실대비표 작성에 관여한 O, J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일반과제에 사용할 부품 등을 국가과제에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고 향후 전담기관의 관리·감독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실대비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N(가명), O, J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예실대비표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나아가 예실대비표에 기재된 지출 내역이 예실대비표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 기재 일반과제에 모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 고 보기는 어렵다.

① N(가명)는 D 근무 당시 일반과제에만 주로 참여하였을 뿐 'AT' 국가과제(이하 'AT' 과제라 한다)에 참여한 것 이외에는 다른 국가과제에 참여한 적이 없으므로, 국가과제에 배정된 예산으로 구입한 부품이 실제로 국가과제에 사용되었는지를 정



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위 AT 과제는 N(가명)의 제보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사실에 포함되었고 N(가명)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정부출연금이 편취된 국가과제라고 특정하여 진술하였으나, 검사는 원심에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② O은 D의 기술혁신총괄 구매자재팀에 소속되어 연구원들이 요청하는 부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일반과제나 국가과제의 수행에는 직접 참여한 적이 없으므로, 국가과제에 배정된 예산으로 구입한 부품이 실제로 일반과제에 사용되었는지, 국가과제에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O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은 예실대비표에 기재된 부품들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J도 2013. 3.경 D에 입사한 후 기술연구소 기술정보팀에 소속되어 2016. 1.경까지 3년간 근무하였는데, 직속상관인 P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국가과제용 지출증빙서류를 단순히 엑셀 파일로 옮기는 작업만을 담당하였으므로, 국가과제에 배정된 예산으로 구입한 부품이 실제로 일반과제에 사용되었는지, 국가과제에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J은 원심 법정에서 "예실대비표에 기재된 부품들이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의 일반과제에 사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지출결의서에 따라 엑셀파일을 작성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선별하여 국가과제 예산으로 부품을 구입한 후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D 기술연구소 기술정보팀 선임 연구원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매자재팀에서 일반



과제용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기술연구소로 가져다주면 그 물품들에 대하여 국가과제별 담당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 국가과제로 실제로 사용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국가과제 명칭을 표기한 다음 J에게 예실대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O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들 중에서 일반과제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추려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차피 국가과제에 사용하니까 일반과제에도 빌려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D에서 일반과제를 수행하는 제어총괄부서 소속 직원 BQ, BR 등도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기술연구소로부터 테스트 장비나 부품 등을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CQ 역시 당심 법정에서 "국가과제와 일반과제 사이에 호환이 가능한 장비나 자재 등은 서로 돌아가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혼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국가과제 사업비로 구입한 후 이를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 D은 이 사건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진 후 국가과제 전담기관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특별실태조사를 받았는데, 위 전담기관들은 I 과제와 관련하여 용도 외로 사용된 일부 금액을 제외하면 모두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I 과제(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U 과제(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V 과제(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W 과제(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전담기관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위 과제를 담당할 직원 4명을 비롯하여 외부 기술전문가 2명, 공인회계사 3명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통해 2016. 1. 7. 및 같은 달 8. D을 방문하여 특별실태조사(1차)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조사팀은 I 과제, U 과제, W 과제, V 과제 모두에 대해 '구매한 재료와 가공품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 후 수사기관의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6. 7. 21. 및 같은 달 22. I 과제에 한정하여 재차 특별실태조사(2차)를 실시하였다. 당시 위 과제 담당 직원 1명, 외부 기관 전문가 3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D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I 과제 3, 4차년도 예실대비표를 통해 집행 물품의 실물이 존재하는지, 실제로 I 과제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팀은 3차년도 재료비 사용금액 중 49,306,134원(정부출연금 47,502,138원)에 대한 용도 외 사용을 확인하였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위 용도 외 사용 부분인 47,502,138원에 대하여 환수처분 등을 하였으나, D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관련 소명을 함에 따라 2016. 12. 20. 열린 산업기술혁신사업 전문위원회에서 위 이의를 수용하고 처분을 보류하였다[그 후 추가 특별실태조사(3차)가 2017. 2. 17. 다시 진행되었으나, 자료 불충분 등으로 특별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② Z 과제의 전담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2017. 2. 10. 및 같은 달 13. D을 방문하여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당시 조사팀은 회계사, 기술전문가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4명,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소속 직원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Z 과제 관련 예실대비표를 전달받아 사전에 이를 확인한 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팀은 '업무분장 및 관련 결재와 내부통제에 있어서 특이사항이 없고, 집행증빙의 서류구비 및 관리에도 특이사항 없음. 재고 관리 관련 특이사항



없음', '연차별 재료비와 개발된 시작품들의 규모와 소요부품들의 수량을 비교할 때 적정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등의 보고를 하였다. 현장 실태점검 이후 2017. 2. 17. 이루어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연구개발에 소요된 재료비 항목과 금액의 규모를 재검토한 결과 대상기관 결과물(프로토타입 제작비 등)과 부합함', '현장점검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고, 전반적으로 기술적 관점에서 연구개발절차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D에 연구비의 지급을 재개하였다.

③ 국방과학연구소는 AC 과제(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2)의 전담기관으로 2017. 6. 14. 소속 연구원과 위탁정산기관 소속 공인회계사 등을 D에 파견하여 연구비 사용 실태를 점검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재료비 사용 품목들이 본 과제 시제품에 장착되었거나, 향후 고장에 대응하기 위해 보관되고 있는 수리부속품의 구매 및 제작을 위하여 사용되었음', '재료비 집행 물품의 타 과제 전용 여부는 미확인(확인불가)'이라고 판단하였다.

7) D이 수행한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국가과제들[이 사건 수사 개시로 과제에서 하차하게 된 I 과제 4차년도(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4) 제외]과 관련하여, 위 과제들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모두 '계속'이라는 평가가 내려졌고, 과제기간이 종료된 U 과제, W 과제, X 과제, Y 과제, AA 과제, AD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에서는 모두 '보통' 내지 '성공'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① 통상적으로 국가과제의 사업비 규모는 전문가의 참여 아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엄격하게 책정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국가과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신청기관이 세부사업 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하고 있다. 다른 전담기관들도 국



가과제 기획 단계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의 관여 아래 사업비와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② D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국가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집행한 현금 사업비(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금액과 이 사건 범죄일람표 '허위 신청금액' 항목 기재 금액을 비교해 보면, I 과제 2차년도, U 과제 1, 2차년도, X 과제, Y 과제 1차년도 등 다수의 과제들에서 허위 신청금액이 현금 사업비의 80%에서 많게는 99%에 달한다. 앞서 본 국가과제의 사업비 편성 과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D이 이와 같이 국가과제 예산 중 대부분의 금액을 허위로 신청하여 일반과제에 사용하였다면 국가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계속' 또는 '성공'과 같은 판정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 2020-10-22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현 _____

 판사 진광철 _____

 판사 배용준 _____